

모성보호 제도 개정안 (22.1.1.시행)

1. 육아휴직 개정

- ① 전체기간 :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/하한액 70만)
- ② 한부모 육아휴직급여: 3개월 100%(상한액250만), 4~12개월 80%(상한액150만)/적립액없음
- ③ 적용대상 : 2022년 1.1 이후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
(예: 2021.10.1~2022.9.30 육아휴직자→ 2022.1.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개정안 적용)

2. "3+3 부모육아휴직제" 신설 (동시 또는 순차적가능/첫 3개월 적용)

- ① 적용대상 및 범위
 - 적용대상 : 생후 12개월 이내(임신중 육아휴직 포함)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 - 적용범위 :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.1.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
- ② 급여액 (부모 모두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적용)
 - 부모모두 사용한 기간이 1개월 : 부 모 각각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00만원)
 - 부모모두 사용한 기간이 2개월 : 부 모 각각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50만원)
 - 부모모두 사용한 기간이 3개월 : 부 모 각각 통상임금 100%(상한액 300만원)
- ③ 지급방식
 -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,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분 소급 지급

3. "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"폐지 (2022년까지 경과규정 운영)

- 22년에 아빠육아휴직특례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육아휴직중 1가지 선택가능
- * 아빠특례: 3개월(통상임금 100%/상한액250만원), 4~12개월(통상임금50%/상한액120만)

임신중 육아휴직 제도 신설 (21.11.19.시행)

1.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(분할 횟수 제한없음)

- *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자, 휴직개시전 피보험기간 180일이상인자
-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에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.

2. 임신중 육아휴직의 종료

- ① 임신중 출산한경우:
 -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출산일 전날에 종료하고,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함.
- ② 임신중 유산한경우:
 -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사실을 통지하고,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근무개시일을 지정해야함. 근무개시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은 유지됨.
- * 유산휴가는 유산일로부터 즉시 사용해야하며, 유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기간에서 제외됨